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(5급 5명)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27일에서 2026년 5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,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협력정책관,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소비자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,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 및 관련 법령상 용어 변경에 따라 ‘특수형태근로종사자’를 ‘노무제 공자’로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6항제11호 중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를 “노무제공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제11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3항에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25. 표시·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수립·시행

26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·개정 및 제도 운영

27. 표시·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·고시의 제정·개정 및 제도 운영

28. 표시·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

29. 표시·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·홍보의 실시

제11조제3항제5호 중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를 “노무제공자”로 한다.

제13조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

제14조제3항제7호 중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를 “노무제공자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전산주사 3 다음에 “행정주사 또는 운전주사 1”을 신설하며, “운전주사 1”을 삭제하고, 행정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 다음에 “행정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3”을 신설하며, “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”을 삭제하고, 행정서기보 3 다음에 “행정서기보·전산서기보·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2”를 신설하며, “행정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2”를 삭제한다.

별표 2의2 중 전산주사 3 다음에 “행정주사 또는 운전주사 1”을 신설하며, “운전주사 1”을 삭제하고, 행정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 다음에 “행정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3”을 신설하며, “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”을 삭제하고, 행정서기보 4 다음에 “행정서기보·전산서기보·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2”를 신설하며, “행정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2”를 삭제한다.

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“2024년 5월 27일”을 “2026년 5월 27일”로, “2024년 5월 28일”을 “2026년 5월 28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경쟁정책국) ①~⑤ (생략)	제9조(경쟁정책국) ①~⑤ (현행과 같음)
⑥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특수형태근로종사자</u> 관련 불 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제도 운영	11. <u>노무제공자</u> ----- -----
12. ~ 23. (생략)	12. ~ 23. (현행과 같음)
⑦·⑧ (생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
⑨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⑨ (현행과 같음)
1. ~10. (생략)	1. ~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</u>	<u><삭 제></u>
⑩ ~ ⑫ (생략)	⑩ ~ ⑫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소비자정책국) ①·② (생 략)	제10조(소비자정책국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③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24. (생략)	1. ~ 2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5. 표시·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 호 시책의 수립·시행
<u><신 설></u>	26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」 등 소비자 정보 제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④ (생 략) ⑤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표시·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수립·시행 2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·개정 및 제도 운영 3. 표시·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·고시의 제정·개정 및 제도 운영 4. 표시·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5. 표시·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·홍보의 실시	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·개정 및 제도 운영 27. 표시·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·고시의 제정·개정 및 제도 운영 28. 표시·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29. 표시·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·홍보의 실시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--	---

6. ~ 20. (생략)	6. ~ 20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시장감시국) ①, ② (생략)	①, ② (현행과 같음)
③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특수형태근로 종사자</u>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 · 시정조치 ·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	5. <u>노무제공자</u> ----- ----- -----
6. ~ 8. (생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기업거래결합심사국) ①~⑤ (생략)	제13조(기업거래결합심사국) ①~⑤ (현행과 같음)
⑥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~5. (생략)	1.~5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6. <u>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</u>
제14조(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) ①·② (생략)	제14조(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특수형태근로 종사자</u> 관련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에 대한 조	7. <u>노무제공자</u> ----- ----- -----

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④ ~ ⑧ (생략) 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 의 정원 5명(행정사무관 5명) 은 <u>2024년 5월 27일까지</u> 존속 하며, <u>2024년 5월 28일</u>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주사 5명으 로 본다. ② (생략)	----- ----- ④ ~ ⑧ (현행과 같음) 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-<u>2026년 5월 27일까지</u> ----- -----<u>2026년 5월 28일</u>----- ----- ----- 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[별표 2]

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행정주사 또는 운전주사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운전주사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	2		
<u>행정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</u> <u>운전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3</u>	+3
<u>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</u>	<u>3</u>	<u><삭 제></u>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	3		
<u>행정서기보·전산서기보·</u> <u>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행정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</u> <u>사서서기보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
•	•	•	
•	•	•	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의2]

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행정주사 또는 운전주사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운전주사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	2		
<u>행정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</u> <u>운전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3</u>	+3
<u>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</u>	<u>3</u>	<u><삭 제></u>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	4		
<u>행정서기보·전산서기보·</u> <u>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행정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</u> <u>사서서기보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
	.	.	.	
	.	.	.	